

『藏書閣』 연구윤리

제1조(목적) 이 연구윤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 『장서각』을 통해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연구윤리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타인이 생성·정리한 자료 등을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의 5문장 이상을 자신의 다른 연구에서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재연하거나(부당한 중복게재),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승인이나 인용 없이 재연하는(자료의 중복사용)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6.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편집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8.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9.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10.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위 1~4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외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행위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저서나 논문의 간행, 발표 등에서 행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연구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타인의 창의적인 연구 내용이나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3. 이미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실린 연구 결과물을 다시 그대로 투고하는 행위
4. 학계나 연구자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① 『장서각』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 가운데 1인을 선임한다.

② 위원은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하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심의) 연구부정행위 심의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윤리규정」을 준용하여,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기

한 내에 진행한다.

제7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제8조(소명기회) ①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재심의) ① 윤리위원회는 재심의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제재조치)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행한다.

1.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장서각』에 투고를 금지한다.
2. 게재 이후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공식적으로 게재가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장서각』을 통하여 공지하고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3.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판정내용을 통보한다.

제11조(기록의 보관)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엄수)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권고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윤리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한다)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윤

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이 연구윤리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윤리규정」을 준용한다.